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격한 기술발전,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정책환경 변화로 공직사회에 특화된 전문성, 장기적 책임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부처 핵심기능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 제도 내에 6급 이하 실무계급을 신설하고, 신설된 계급에 대한 선발, 평가, 승진 등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전문관’ 계급 신설(안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별표1)

-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일반직 6급에 상당하는 ‘부전문관’ 계급을 신설하고, 운영 계급 범위에 수석전문관을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관’은 승진 심사를 거쳐 일반직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부전문관’ 임용권의 위임(안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 소속 장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부전문관’에 대한 임용권 및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전문 분야’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 ‘전문 분야’ 지정 대상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업무 분야’로 명확화

라.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근거(안 제6조의2 제1항·제2항)

-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함

마. ‘부전문관’ 전직 요건 신설 및 전문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가능 사유 추가(안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일반직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전문관’ 선발 요건을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가능한 사유 추가 및 전직 결정 절차를 마련함

바. ‘부전문관’의 승진 요건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 ‘부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으로 하고, 승진임용 시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함

사. ‘부전문관’ 근무성적평가 근거 신설(안 제2조 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부전문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전문성 평가 등의 항목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로 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평가를 제외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함

아. ‘부전문관’ 근무연수평정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항·제3항)

- ‘부전문관’에 대하여 연 2회 근무연수평정을 실시함
- 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 등 정비(안 제1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 ‘부전문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점수를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95점 이상, 근무연수평정 5점 이상으로 함
- 차. 학위 경채 기준에 ‘부전문관’ 항목 신설(별표2)
-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는 ‘부전문관’ 경채시험에 응시 가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와 합의하였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5. 11. ~ 6. 10.)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급”을 “5급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 전문직공무원을 운영하는 계급의 범위를 아래 각 호 중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계급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

⑤ 임용권자는 제4항 제3호를 계급의 범위로 하는 전문 분야의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관은 4급 승진 임용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임용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제4조제3항 중 “전보권”을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을 “각 부처 공통 업무 외에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1년간”을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관”을 “전문관 및 부전문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5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이 경우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은 아래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급 공무원 :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6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6급 및 7급 공무원 :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7급 공무원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의 직무 보좌 등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 외에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필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5.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문 분야 업무 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제2항 중 “5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된 사람이 2년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제되어 다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직무급을 계산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라 전직 하기 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7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다.

1. 전문 분야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전문 분야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 업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나. 수사·조사중인 경우(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전문직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임용심사위원회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상자에게 조건부 적합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평가에서 조건부 적합자가 근무성적평정 또는 전문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제6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이행할 수 있다.

⑧ 임용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가 지정되어 있는 부서가 제5조에 따라 전문 분야로 지정되고, 해당 부서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직무급을 계산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전직 당시 근무중이었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의 요건 판단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전문관 :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在職年數)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전문관 :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관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의 제목 “(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의 승진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를 “수석전문관으로 또는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로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근무실적

2. 전문성 평가

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

다.

⑦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전문관의 등급별 평정점을 정한다.

⑧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⑨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전직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전문관에서 부전문관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2제5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2월 31일 현재”를 “다음 각 호의 일자에”로, “전문관”을 “전문관과 부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2월 31일”을 “제1항 각 호의 일자”로 한다.

1. 전문관 : 12월 31일
2. 부전문관 : 6월 30일, 12월 31일

제17조제1항 중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을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부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1월 31일”을 “전문관의 경우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의 경우 1월 31일과 7월 31일”로, “전문관에 대하여”를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성과평가규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다른 성과계약등”을 “다른”으로, “90점”을 “9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점”을 “5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른 성과계약등”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전문	공업 전문	일반기계	수석전문관	공업 전문관	공업 부전문관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전문	일반농업	수석전문관	농업 전문관	농업 부전문관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임업 전문	산림조경		임업 전문관	임업 부전문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환경			
	수의 전문	수의		수의 전문관	수의 부전문관
	해양수산 전문	일반해양		해양수산 전문관	해양수산 부전문관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로			
		해양교통시설			
	기상 전문	기상		기상 전문관	기상 부전문관
		지진			
	보건 전문	보건		보건 전문관	보건 부전문관
		방역			
	의료기술 전문	의료기술		의료기술 전문관	의료기술 부전문관

식품위생전문	식품위생
의무전문	일반의무
	치무
약무전문	약무
간호전문	간호
환경전문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전문	일반항공
	조종
	정비
	관제
시설전문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시설조경
	디자인
방재안전전문	방재안전
전산전문	전산개발
	전산기기
	데이터
	정보보호
방송통신전문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방송기술
방송무대전문	방송무대기술
	방송제작

식품위생전문관	식품위생부전문관
의무전문관	-
약무전문관	약무부전문관
간호전문관	간호부전문관
환경전문관	환경부전문관
항공전문관	항공부전문관
시설전문관	시설부전문관
방재안전전문관	방재안전부전문관
전산전문관	전산부전문관
방송통신전문관	방송통신부전문관
방송무대전문관	방송무대부전문관

교정 전문	교정		교정 전문관	교정 부전문관	
보호 전문	보호		보호 전문관	보호 부전문관	
검찰 전문	검찰		검찰 전문관	검찰 부전문관	
마약수사 전문	마약수사		마약수사 전문관	마약수사 부전문관	
출입국관리 전문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전문관	출입국관리 부전문관	
철도경찰 전문	철도경찰		철도경찰 전문관	철도경찰 부전문관	
행정 전문	일반 행정		행정 전문관		행정 부전문관
	인사조직				
	법무 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 행정				
회계					
직업상담 전문	직업상담			직업상담 부전문관	
세무 전문	세무			세무 부전문관	
관세 전문	관세			관세 부전문관	
사회복지 전문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문관	사회복지 부전문관	
통계 전문	통계	통계 전문관	통계 부전문관		
사서 전문	사서	사서 전문관	사서 부전문관		
감사 전문	감사	감사 전문관	감사 부전문관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계급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근무경력 또는	박사	4년		

연구경력	석사	8년	4년	
------	----	----	----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전문 분야는 제3조제4항의 계급 범위 중 제1호로 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 및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관에 대하여 2027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보를”을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항 중 “5급”을 “5급으로,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전문직공무원”을 “수석전문관·전문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를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부전문관에”로 한다.

④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말한다) 연구사·지도사 및 수석전문관·전문관”을 “말한다)·연구사·지도사 및 수석전문관·전문관·부전문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전문관

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을 “연구관·지도관·수석전문관·전문관”으로, “연구사·지도사”를 “연구사·지도사·부전문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등) ①·② (생략)	제2조(적용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u>제12조부터 제19조까지</u> ,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제14조, 제16조부터 <u>제18조까지</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전문직공무원의 계급은 <u>수석전문관과 전문관</u> 으로 구분한다.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 ----- <u>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전문관은 일반직 <u>5급</u> 에 각각 상당한다.	③ ----- ----- <u>5급</u> 에, 부전문관은 일반직 6급----- -----.
<u><신 설></u>	④ 소속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 전문직공무원을 운영하는 계급의 범위

<신 설>

를 아래 각 호 중 하나로 정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계급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수석전문관, 전문관 및 부전문관

3. 전문관 및 부전문관

⑤ 임용권자는 제4항 제3호를 계급의 범위로 하는 전문 분야의 전문관을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관은 4급 승진 임용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임용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2.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의 4급 공무원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 -----
-----.

④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① ----- 각 부처
공통 업무 외에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고유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
----- 1년간, 부전문관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

-----.

② 전문관 및 부전문관-----

-----.

제7조(전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 설>

[illegible]

1. ----- 7
급 -----
-----.이
경우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
원은 아래의 기간(휴직·직위
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
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5급 공무원 : 해당 계급으
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
년 이상의 기간으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된 5급 이상

6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6급 및 7급 공무원 :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으
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
간. 다만 7급 공무원인 경
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공무
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의 직무
보좌 등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 외에
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필
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를 거친 경우

5.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전문 분야 업무 수행이 부
적합한 경우

② -----

----- 7급 -----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
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
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
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
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
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
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
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
(算入)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

③ -----

-----.
---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④ -----

-----.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
된 사람이 2년 이내에 해당 사
유가 해제되어 다시 전문직공무
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제3항
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 및 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에 따른 전문직무급을 계산할

⑤ (생략)

<신설>

때 제1항제4호에 따라 전직하기 전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다.

1. 전문 분야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전문 분야에서의 지

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전문 분야 업무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이 요구(법 제82조제2
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
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로서 임용령 제32조에 따
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

나. 수사·조사중인 경우(검
찰·경찰, 그밖의 수사기
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
보를 받은 경우,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
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
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으로 평

<신 설>

<신 설>

가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
로 전문직공무원의 직무수행
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임용심사위원회는 제6항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
람은 조건부 적합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상자에게 조
건부 적합 결정을 통보한 날부
터 3개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평가에서 조건부
적합자가 근무성적평정 또는 전
문성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제6항에 따른 절차
를 다시 이행할 수 있다.

⑧ 임용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가 지정되어 있는
부서가 제5조에 따라 전문 분야
로 지정되고, 해당 부서에서 전
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 및 공무원수당 등에

<신 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수
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
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
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
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
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
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
직무급을 계산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전직 당시 근무중이었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
한 기간을 포함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전직의 요건 판
단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전
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전문관 : 3년 이상(제7조제1
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
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在
職年數)가 1년 이상이어야 한
다)

2. 부전문관 : 2년 이상(제7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
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기간
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

-----.

1.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
직한 경력

2.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
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수석전문관으로의 승진임
용)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
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1. 전문관

가. 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
서 재직한 경력

나. 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
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부전문관

가. 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
서 재직한 경력

나. 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
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제11조(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의 승진임용) -----

----- 수석전문관으로
또는 부전문관을 전문관으로 승
진임용하려-----

-----.

제14조의2(근무성적평가) ① 부전
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 근무실적

2. 전문성 평가

3.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
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⑤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

<신 설>

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전문관의 등급별 평정점을 정한다.

⑧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⑨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4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5조제 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전직 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전문관에서 부전문관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다.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 단위로 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평가 대상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별로 근무성

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 등급별 평정 점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결과에 따라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2제5항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다음 각 호의 일자에 ----- 전문관과 부전문관-----
-----.

1. 전문관 : 12월 31일

2. 부전문관 : 6월 30일,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⑤ (생략)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제1항
각 호의 일자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2제7항에 따라 부여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문관의 경우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의 경우 1월 31일과 7월 31일-----
-----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성과평가규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1.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 (생략)

<신설>

<신설>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따른 -----
----- 95점

2. -----
----- 5점 -----
--

④ -----
----- 따른 -----

-----.

⑤ (현행과 같음)

⑥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

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
보자 명부의 조정·삭제 및 승
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
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연 락 처	(044) 201 - 8297